



# 동의의결·시정조치 이행관리





# 목 차

- 1 동의의결제도 개요**
- 2 동의의결제도 효과**
- 3 동의의결이행관리 제도**
- 4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이행관리 제도**

# 1

## 동의의결제도 개요

### 1. 동의의결제도 정의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 신청자

법 위반 혐의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신청 제외 대상

카르텔 및 중대·명백한 위법행위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 ②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정방안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 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1

## 동의를결제도 개요

### 2. 동의를결제도 절차



|                  |  |
|------------------|--|
| 1 동의를결 신청        | 신청인이 동의를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신청서는 심의일 전까지 도달해야 함)                        |
| 2 개시여부 결정        | 심사관은 동의를결 신청사실을 회의에 보고, 해당 회의에서 개시여부 결정(14일 이내)<br>→ 인용: 심의절차 중단, 기각·각하: 심의절차 재개 |
| 3 잠정 동의를결안 작성·보고 | 심사관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잠정 동의를결안'을 작성 →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송부(30일 이내)                      |
| 4 의견 수렴          | 심사관은 '잠정 동의를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인·관계 행정기관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 검찰총장과 서면협의(30~60일)               |
| 5 동의를결 (최종)확정    | 심사관은 '최종 동의를결안'을 회의에 상정(14일 이내), 해당 회의에서 인용 여부 결정 및 동의를결서 작성(30일 이내)             |
| 6 동의를결 이행관리      | 신청인은 동의를결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동의를결이행관리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                       |

# 1

## 동의를결제도 개요

### 3. 동의를결제도 도입 현황

- ☞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2011)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2014)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2022)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도입(2022)

### 4. 동의를결제도 전망

-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 도입 확대 및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동의를결을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제도의 활성화가 전망됨

**도입 확대**    중소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에 도입

**적극 활용**    공정위, 편익점 본부 4개사가 신청한 동의를결 절차 개시(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를결 제도 도입 후 최초 사례)

**절차 개선**    동의를결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동의를결 절차에 서면 심의 방식을 도입

# 1

## 동의의결제도 개요

### 5. 역대 동의의결제도 인용 사례(1)

📄 25건의 신청 중 12건이 최종 인용됨(2024. 9. 기준)

| 신청인                       | 의결일          | 동의의결안 주요 내용   | 이행관리 |
|---------------------------|--------------|---|------|
| ① 네이버(주)<br>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 | 2014. 5. 8.  | · (경쟁질서 회복) 전문서비스 및 키워드 광고 구분 표시 등<br>· (소비자 등 후생제고)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 출연, 소비자 및 중소기업자 지원 등 1,000억 원                       | 완료   |
| ② (주)다음커뮤니케이션             | 2014. 5. 8.  | · (경쟁질서 회복) 전문서비스 및 키워드 광고 구분 표시 등<br>· (소비자 등 후생제고) 기금 조성, 유망 벤처기업 지원 등 40억 원  | 완료   |
| ③ SAP코리아(주)               | 2014. 12. 4. | · (경쟁질서 회복) 고객사 대상 부분 해지 허용정책 도입 등<br>· (소비자 피해구제)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 출연, 청소년 및 대학생 지원 등 약 188억 원                           | 완료   |
| ④ 마이크로소프트                 | 2015. 8. 24. | · (표준필수특허 관련 시정) 상대방 특허 라이선스 요구 금지 등<br>· (비표준 특허 관련 시정) 현행 특허 실시료율 인상 금지 등<br>· (사업제휴계약 관련 시정) 경쟁상 민감한 영업정보 교환 금지 등  | 완료   |
| ⑤ SK 텔레콤(주)               | 2016. 9. 29. | · (거래질서 개선) 표시광고 및 홈페이지 개선 등<br>· (소비자 피해구제) LTE 데이터 제공, 요금제 정보제공 강화 등  | 완료   |
| ⑥ (주)KT                   |              |   |      |
| ⑦ (주)LG유플러스               |              |   |      |
| ⑧ 남양유업(주)                 | 2020. 5. 28. | · (대리점 피해구제) 동종업계 평균 이상의 위탁수수료율 유지 등<br>· (거래질서 개선)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등<br>· (대리점 후생증대) 순영업이익 공유, 자녀 대학 장학금 확대, 출산·양육 지원 등 | 진행 중 |
| ⑨ 애플코리아(우)                | 2021. 3. 16. | · (거래질서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및 일방적 계약해지권 삭제 등<br>· (상생지원) 제조업R&D 지원센터 설립, 유상수리 비용 및 AppleCare+할인 등 1,000억 원                  | 완료   |

# 1

## 동의의결제도 개요

### 5. 역대 동의의결제도 인용 사례(2)

| 신청인               | 의결일           | 동의의결안 주요 내용   | 이행관리 |
|-------------------|---------------|---|------|
| ⑩ (주)스타필드 하남      | 2022. 11. 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질서 개선)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인하, 관리비 청구서 및 관리비 구성항목 개선</li> <li>· (매장임차인 피해구제)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납부금액 일부 환급 → 현금환급/광고지원</li> <li>· (매장임차인 후생지원) 직원식당/특식, 기념일 선물 제공, 심리상담, 자녀 돌봄, 문화·여가 지원</li> </ul>            | 완료   |
| ⑪ (주)유진종합건설       | 2024. 3. 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추가공사대금 및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특약 발생 손해액 이자 지급</li> <li>· (하도급거래 질서개선) 하도급대금 현금결제 비율 100%, 전자계약시스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li> <li>· (재발방지 방안) 하도급 특별교육, 자체교육 실시, 신규 하도급 계약 수목하자 관련 유지관리 비용지원</li> </ul>         | 진행 중 |
| ⑫ (주)한솔           | 2024. 6.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질서 개선) 가맹사업자와 「상생을 위한 협약서」 체결, 점포환경개선 사전협의 및 변경계약 체결</li> <li>· (피해구제 예방) 미지급 부담액 지급, 가맹사업법 교육이수, 승인검토서 폐지, 점포의 소리제도 운영</li> <li>· (상생·협력 지원) QSC 개선지원(청소비, 유니폼 및 주방용품), 전산장비 지원, 광고판축비 현행유지</li> </ul> | 진행 중 |
| ⑬ (주)지에스리테일(GS25) | 의결 예정         | 잠정동의의결안 마련 중  | -    |
| ⑭ (주)비에프리테일(CU)   |               |   |      |
| ⑮ (주)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               |   |      |
| ⑯ (주)이마트24        |               |   |      |

# 1

## 동의의결제도 개요

### 6-1. 최근 사례(최종 동의의결 기각) (1)

#### ☞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등 4개사 최종 동의의결안 기각**

#### **브로드컴 상생기금 200억 원 동의의결안 마련...공정위, 의견수렴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로드컴 인모퍼레이티드 등 4개사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9일 지난해 8월 브로드컴 등 4개사가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으며 이달 10일부터 내년 18일까지 40일 동안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동의의결 개시

#### **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기각...'피해 보상 부족'**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브로드컴 등 4개사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사(005930)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자진사퇴 방안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마련한 동의의결안이 삼성전자의 피해를 애통하게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 최종 기각

#### **삼성전자도 피하지 못한 '핵폭탄 갑질'...미국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

선적 중단 등 각종 불공정 수단을 동원해 삼성전자에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경쟁당국으로부터 19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브로드컴은 구매주문승인 중단 등이 조치가 '핵폭탄'에 해당할 정도로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삼성전자에 LTA 체결을 강요했고, 삼성전자는 결국 필요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는 등 금전적 손해를 떠안아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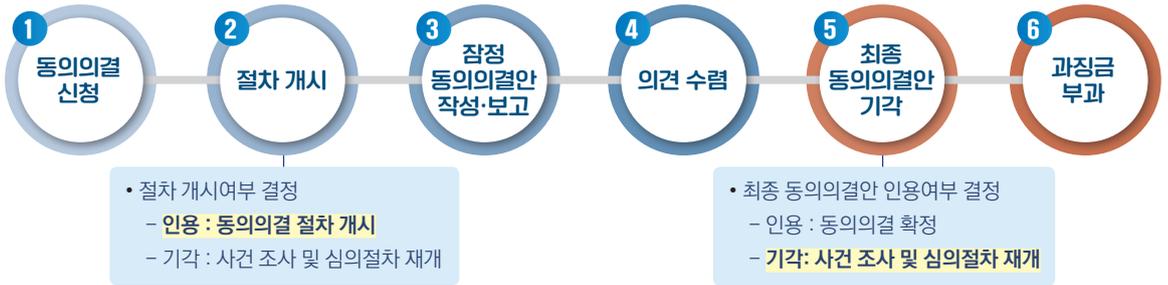
#### 과징금 부과

# 1

## 동의의결제도 개요

### 6-1. 최근 사례(최종 동의의결 기각)(2)

📄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등 4개사 최종 동의의결안 기각



📄 잠정동의의결안(요약)

- (행위중지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 거래상대방 의사에 반한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등
- (거래질서 개선 및 중소기업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한 상생방안) 반도체/IT 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자 지원(200억 원) 등

📄 기각 사유: “동의의결 인용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2023. 6. 공정위 보도자료)

📄 심의 결과: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190억 원 부과

## 6-2. 최근 사례(동의의결 개시 인용)

☞ **편의점 본부 4개사, 동의의결 개시 결정(2024. 9. 4.)** →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월 4일 소회의에서 **4개 편의점 본부** 이하 '편의점 4사'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마트24(IGMS), • ㈜비치에프리테일(CJ), • ㈜코리아세븐(미니스톱)세븐일레븐, • ㈜이마트4의, 4개사는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거의 100% 차지
-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안전한 시장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간을 신속하게 종료하는 제도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 →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일명 '미납제벌칙')을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장물 기준을 적용하여 신장물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신상품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납품장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루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절차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해당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미납제벌칙을 인하여**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신장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0-1. 납품업체 권익증진 및 거래절차 개선】**

또한,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장물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0-2. 납품업체 권익증진 및 거래절차 개선】**

아울러,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45억 원 상당**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하였다. **【0 피해구제 및 상생협력】**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절차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사건은 발주 상품 미납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민사적 사안이 결부된 것으로 **법 위반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체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절차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서,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절차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편의점 4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 <붙임> 편의점 4사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 개요

|       |                       |     |     |                    |
|-------|-----------------------|-----|-----|--------------------|
| 담당 부서 | 기업거래합의사무국<br>유통대리인조사과 | 책임자 | 과 장 | 박영식 (044-200-4603) |
|       |                       | 담당자 | 조시관 | 안용철 (044-200-4606) |
|       |                       |     | 조시관 | 안영택 (044-200-46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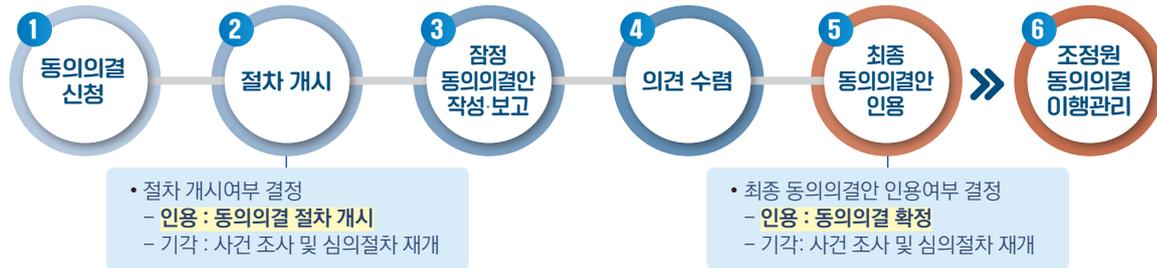
대한민국  
지적재산관리

이 사건은 2024년 9월 4일 제1회 공개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기버은 증상은 **후내 명·안영택**



## 6-3. 최근 사례(동의를결 최종 인용)

☞ (주)유진종합건설(하도급법), (주)한솔(가맹사업법) 최종 동의를결안 인용



☞ 인용 사유: “신속하게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것이 거래질서 개선 등 공익에 부합”하다고 판단

# 2

## 동의의결제도 효과

###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통한 시장질서 회복



#### 사업자

- 법 위반 판단 없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  
→ 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
- 법률상 불확실성 해소 및 과징금 면제
- 기업 이미지 및 평판 훼손 방지



####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

-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전통적인 제재 조치와 다르게 직접적이고 다양한 시정방안을 통해 피해의 실질적 구제 가능



####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

-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시간 및 비용 ↓  
→ 행정 효율성 및 법 집행 효과 ↑
- 유사 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 가능  
→ 경쟁당국의 사건처리 부담 ↓

# 2

## 동의의결제도 효과

### 1. 공정위 조사 및 처분, 동의의결 제도, 분쟁조정 제도 비교

| 구분      | 공정위 조사 및 처분            | 동의의결                               | 분쟁조정                        |
|---------|------------------------|------------------------------------|-----------------------------|
| 절차개시 방법 | ① 신고인 신고<br>② 공정위 직권조사 | 조사절차 중 피심인의 신청<br>→ 공정위 개시여부 결정    | ①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br>② 공정위 조정의뢰 |
| 절차주도 주체 | 공정위                    | 피심인·공정위                            | 당사자·조정원                     |
| 처리기간    | 평균 524일 <sup>1)</sup>  | 약 231일 <sup>2)</sup>               | 90일 <sup>3)</sup>           |
| 강제성 여부  | ○ <sup>4)</sup>        |                                    | ×                           |
| 비밀유지 여부 | ×                      |                                    | ○                           |
| 효력      | 행정처분 효력                |                                    | 재판상 화해 효력 <sup>6)</sup>     |
| 결과      | 범위반여부 확정               | 거래질서 개선 및 피해구제 등<br>시정방안 확정 후 이행관리 | 피해구제                        |

1) 최근 5년(2019년 ~ 2023년)간 '위원회 의결사건' 평균 처리기간 기준

2)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사건 신청일(2022. 4. 8.) ~ 동의의결안 최종확정일(2022. 11. 24.) 소요 기간

3) 공정거래법 및 조정원 분쟁조정사무처리지침 상 최대 조정가능 기간(30일 연장기간 포함)

4) 동의의결의 경우, 최종동의의결안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동의의결 취소 검토

5) 동의의결의 경우, 동의의결 절차 개시 등 사항 보도자료 배포

6) 공정거래법 제78조에 따라 분쟁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 '조정조서' 를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 2

## 동의를결제도 효과

### 새로운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 분쟁발생 시 새로운 해결 수단

- 공정위 조사 및 처분과 조정절차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제3의 제도



#### 피심인 입장에서의 동의의결제도 효용성

- 피심인이 직접 ① 동의의결 신청, ② 잠정동의의결안 제시 → 능동성, 자율성
- 거래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 상생협력분야의 평가 등급 하향 방지
  - CP등급평가, 협약이행평가 등 제도의 등급 하향 방지
- 관련 법상 불이익 방지
  -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방지 등

# 2

## 동의를결제도 효과

###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 ☞ 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경우 동의를결제도 활용
  - 해당 혐의 및 민사소송 등 관련 분쟁 방지, 신속한 종결



- ☞ 해당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는 법 위반 추정 금지 효과
  - 동의를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음(공정거래법 제89조 제4항)

# 2

## 동의를결제도 효과

### 4.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대상 기업

- ☞ 평가 대상 기업이 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동의를결제도 활용 시  
· 평가점수 감점, 평가등급 하향 또는 무효 등 불이익 방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결과 발표 시 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등이 예상되는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를 유예하고 최종 등급 확정 보류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평가 12개사, 2022년 평가 5개사에 대한 평가결과 보류 및 등급 공표 유예  
· 법 위반 심의결과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평가점수 감점\* 및 평가등급 하향 조치  
\* 시정명령(△15), 과징금(△20), 고발(△25)

# 2

## 동의를결제도 효과

### 법 위반에 따른 등급 변동 사례

| 구분  | 법 위반 행위 및 처분 내용                 | 기존 등급 | 최종 등급 |
|-----|---------------------------------|-------|-------|
| A기업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 최우수   | 등급외   |
| B기업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 최우수   |       |
| C기업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법인 고발 | 우수    |       |
| D기업 |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 우수    |       |
| E기업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 최우수   |       |
| F기업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 우수    |       |
| G기업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 양호    |       |

\* 협약이행평가 등급: 최우수(95점 이상)-우수(90점 이상)-양호(85점 이상)-등급외(85점 미만)

➤ 따라서 동의를결제도는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대상 기업에게 활용가치가 높은 제도임

# 2

## 동의를결제도 효과

### 5. CP등급평가 신청 기업

- ☞ CP등급평가 신청 기업이 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동의를결제도 활용  
→ 평가등급 하향, 무효 등 불이익 방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CP등급평가를 받은 기업이 유효기간 내에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인하여 제재(고발,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  
→ 과징금 부과: 1단계 ↓, 고발: 2단계 ↓

➤ 따라서 동의를결제도는 CP등급평가 신청 기업에게 활용가치가 높은 제도임

# 3

## 동의를결이행관리 제도

### 1. 동의를결관리 체계의 변화

#### 동의를결 확정 후 시정방안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 미흡

- 동의를결제도의 도입 취지 달성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꾸준히 제기
  - 국회는 동의를결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2020)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분야의 동의를결 사건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 제90조(동의를결의 절차)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80조(동의를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
|--|--|
| <p>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를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등 동의를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p> | <p>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를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p> |

# 3

## 동의를결이행관리 제도

###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응

#### ☞ 동의를결이행관리 운영지침, 업무 매뉴얼 등 체계화된 업무절차 정립

-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전문가 자문 등 동의를결 이행점검 방법 다변화를 통해 이행관리의 실효성 ↑
- 신청인에게 이행실적 평가기준, 실적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여 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예측가능성 ↑

➤ 신청인의 동의를결 이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성실한 이행을 지원 → 거래질서 개선 및 자율적인 상생문화 조성에 기여

#### 동의를결 이행관리 업무 절차

| 이행관리 계획 수립   | 이행관리 수행  | 이행관리 결과보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방안 이행계획 협의</li> <li>· 이행관리 기본계획 수립</li> </ul> |  서면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별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정거래위원회 송부</li> </ul> |
|  |  설문조사     |   |
|  |  이해관계자 면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정거래위원회 송부</li> </ul>  |
|  |  전문가 자문   |   |

#### 이행실적 평가기준

| 평가의견            | 세부 내용   |
|-----------------|---|
| ① 정상이행          | 이행계획에 따라 시정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례                                   |
| ② 이행촉구 필요       | 신청인의 경미한 절차상 실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미이행 사례 → 현장 계도 또는 향후 이행계획 제출 요청 |
| ③ 동의를결 취소 검토 필요 | 신청인의 중대한 미이행 사항이 확인되는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를결 취소 검토 요청             |

# 3

## 동의의결이행관리 제도

###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응

#### ☞ 동의의결 신청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홍보 실시

-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대상 기업, CP등급평가 신청 기업, 하도급업체 및 가맹본부, 법무법인 등 대상 동의의결 활용 효과 및 수요자에 맞는 신청 유인을 중점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설명회’ 수시 개최
- 동의의결 수요가 있는 잠재적 수요자를 발굴하여 제도의 효과 홍보 및 활용 독려 → 동의의결 신청 활성화 도모

**동의의결제도 요라는 무엇인가?**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행위를 방지 또는 사전에 예방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피해를 줄이고 기업간의 또는 소비자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로써, 사전계약제인 사전 CP등급 평가 제도와 함께 사전 및 사후 평가를 통한 기업간 신뢰를 증진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 공평거래를 통한 시장경쟁력 제고, 사회적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대효과**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한 시장질서의 신속한 회복

**1) 신청대상**

- 법 위반 행위를 없앤 사전에 신속회 회복  
→ 사전 계약에 소급하는 사전 평가 실시
- 법률상 불합법성 취소 및 무효화 문제  
→ 기업 이익의 보호 효과 기대

**2) 신청대상**

- 사전계약, 계약금 반환 등의 공익 침해행위 방지  
→ 소비자 신뢰도 제고(사전 CP등급 평가제도와 함께 시행)

**3) 신청대상**

FAI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1588-1800  
☎ 02-2600-1111  
🌐 서울 시 중구 세종대로 99 (연세대학교역)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동의의결제도 홍보자료**



# 4

##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이행관리 제도

### 시정조치 개념 등

-  **시정조치:** 법 위반 상태를 법에 합치하는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행정처분
- 과징금 등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적인 법 집행 수단 중 하나

#### 작위명령

피심인의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

\* 유형) 이용강제 · 거래개시 · 거래재개명령,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 합의파기명령 등

예) "A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B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생산에 필수적인 원료C의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할 경우, B사업자가 피심인에게 C의 공급 요청시 합리적 거래조건으로 요청 받는날부터 30일 이내 공급하여야 한다."

#### 부작위명령

피심인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

\* 유형) 행위중지명령, 합의금지명령

예) "피심인은 향후 5년까지 A시장에서 B사업자에게 C의 방법으로 D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조적명령

시정조치의 이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된 명령에 부가하여 명하는 시정조치

\* 유형) 교육실시명령, 보고명령, 통지명령 · 교부명령 등

# 4

##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이행관리 제도

### 시정조치이행관리 업무 위탁

- 2023. 6. 20. 공정거래법의 절차법제 개정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후, 공정거래법 제97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3조의2 등에 근거하여 조정원이 시정조치 이행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행관리 업무를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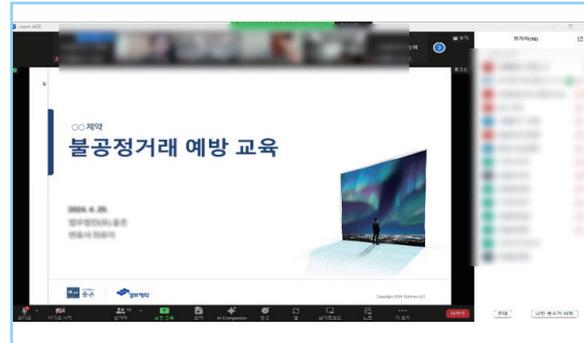
### 조정원 시정조치이행관리 중 사건

- 제약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교육이수명령)

약 처방 대가로 현금 준 ○○제약 과징금 3억 '철퇴'

| 공정위, '빅플플리듬' 은어 쓰며 의사·약사 대상 리베이트 지급 행위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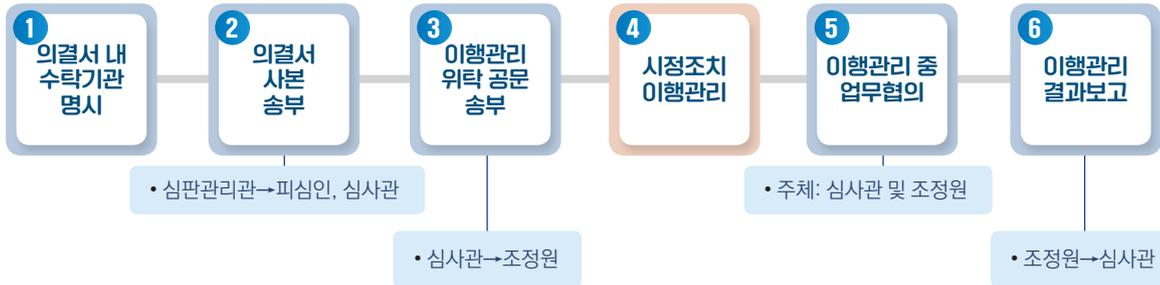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공정위)는 ○○제약(○○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 4

##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이행관리 제도

### 시정조치이행관리 절차도



|                 |   |
|-----------------|---|
| ① 의결서 내 수탁기관 명시 |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을 기재하여 의결  |
| ② 의결서 사본 송부     | 심판관리관은 의결 등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피심인, 심사관에게 의결서 송부                                       |
| ③ 이행관리 위탁 공문 송부 | 심사관은 이의신청 기간(통지일부터 30일) 중 의결서와 함께 구체적인 위탁내용, 참고자료 등을 기재한 공문을 조정원에 송부                    |
| ④ 이행관리          | 조정원은 심사관의 이행관리 위탁 공문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이행관리 업무 수행  |
| ⑤ 이행관리 중 업무협의   | 조정원은 이행관리 계획 및 현황 등을 심사관에게 보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심사관의 자문을 구하거나 협의할 수 있음                      |
| ⑥ 이행관리 결과보고     | 조정원은 이행완료 기간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사관에게 이행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이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심사관과 조정원이 중간보고 날짜 협의) |

**감사합니다**



## 동의의결 및 시정조치 이행관리 전문기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TEL : 1588-1490(내선 232~234)